

의안번호	2200529
의 퇴 인	송언석 의원
회 답 일	2024. 9. 20.
추 계 번호	24A1000

재정건전화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주기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며, 매년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평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15억원(연평균 23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재정전략위원회(제5조)	12	12	12	12	12	60	12
국가채무 관리(제6조)	-	-	-	-	39	39	8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15조)	2,288	2,288	2,288	2,288	2,288	11,440	2,288
합계	2,300	2,300	2,300	2,300	2,339	11,539	2,30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재정전략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둬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2	안 제6조 (국가채무의 관리)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초과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의무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5조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계획)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국세감면의 제한)	○ 국세감면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	의무규정
5	안 제9조(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출)	○ 재정지출·조세감면 수반 법률안 발의·제안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	의무규정
6	안 제10조(중앙관서의 재정건전화계획)	○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1조(재정개혁포상금)	○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3조(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4조(장기재정전망)	○ 5년 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16조(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 재정건전화계획 등에 대한 재정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재정전략위원회)	○	—
2	안 제6조(국가채무의 관리)		
3	안 제15조(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계획)		
4	안 제8조(국세감면의 제한)	X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기시행 중인 사항이므로 현재 업무추진 범위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추가 재정소요 미발생)
5	안 제9조(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출)		
6	안 제10조(중앙관서의 재정건전화계획)		
7	안 제11조(재정개혁포상금)		
8	안 제13조(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9	안 제14조(장기재정전망)		
10	안 제16조(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규정 중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현재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하고, 신설에 해당하는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현재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 「국가재정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00530, 2024.6.17.)이 발의되어 있음

[표 2] 제정안의 주요 규정과 현행 「국가재정법」과의 비교

제정안	현행 「국가재정법」
재정전략위원회(제5조)	신설
국가채무의 관리(제6조)	신설
국세감면의 제한(제8조)	국세감면의 제한(제8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출 등(제9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출 등(제87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제79조의2)
중앙관서의 재정건전화계획(제10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제28조)
재정개혁포상금(제1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제49조)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제13조)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제9조의2제2호)
장기재정전망(제14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제7조제4항)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제15조)	신설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제16조)	재정정보의 공표(제9조)

주: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 「국가재정법」의 중복 규정(제7조제4항, 제87조 및 제88조)을 정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00530, 2024.6.17.)이 발의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험’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것으로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재정전략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될 것¹⁾으로 보아 이를 추계함
 - (구성) 안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민간위원은 국회의장 등이 추천하는 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위원장 1인(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 위원 4인(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재정부차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외에 민간위원 4인(국회의장 추천 2인, 교육부장관 추천 1인, 행정안전부장관 추천 1인)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
 - (횟수) 안 제5조제3항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매월 1회씩 연 12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
 -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 의무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 관리,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평가와 이행상황 점검·보완, 장기재정전망 추계 및 재전망 등 총 10개 사항을 주관하도록 규정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연간 추가 재정소요) 민간위원 4인 × 25만원 × 연 12회 = 1,200만원

[표 3] 제정안의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안 제5조)	12	12	12	12	12	60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제정안은 재정전략위원회 구성 외 별도의 사무국 설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국가채무 관리(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경우 관련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추계함
 - 제정안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현재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결산보고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
 - 다만 제정안 제6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경우 관련 정책연구 추진을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 아래 [표 4]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정책연구로, 총 5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1건당 평균 용역비는 39백만원으로 조사됨

[표 4] 국가채무관리 및 국가채무비율 관련 정책연구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수행연도	금액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재정준칙 관련 재정정책 사례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20
재정리스크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한국사회과학회	2020	30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8	48
재정지표 보완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48
주요 OECD 국가의 재정규율제도 운용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49
평균			39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 따라 5년 주기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3,900만원(연평균 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의 국가채무비율 재검토(5년 주기)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가채무관리(안 제6조제3항)	-	-	-	-	39	39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계획(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사회보험의 소관 부처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평가·보고할 경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평가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추계함

○ 제정안에 따라 매년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포함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회보험 1건당 [표 6]의 국민연금²⁾ 재정계산 등 법정계획 수립시 소요 비용의 평균액(2.8억원)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 재정소요) 사회보험 8종 × 2.8억원 = 22.5억원

[표 6] 8대 사회보험 재정 관련 법정계획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법정계획(최근 실시연도)	소관부처	근거법률	수행기관	소요비용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3)	복지부	「국민연금법」 제4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35
제5차 사학연금 재정계산('20)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	사학연금공단	자체 수립
제5차 공무원연금 재정계산('2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66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체 수립
제5차 군인연금 재정계산('20)	국방부	「군인연금법」 제36조	한국국방연구원	97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6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3)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4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매년)	고용부	「고용보험법」 제81조	－	자체 수립
산재보험 기금운용계획(매년)	고용부	「산재보험법」 제98조	－	자체 수립
평균				281

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법규에 근거한 5년 주기의 재정계산 제도가 없음
 자료: 부처별 예산절명자료(Ⅱ-1),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총 8종의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 아래 [표 7]은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메타평가 관련 정책연구 현황으로 총 5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1건당 평균 용역비는 40백만원으로 조사됨

2)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표 7] 기획재정부 주관 메타평가 관련 정책연구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수행연도	금액
'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을 위한 운영성과 점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20
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30
2020회계연도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21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운영 평가용역	한국개발연구원	2021	81
농어업재해보험 및 국가재보험에 대한 재정부담 적정성 분석	부산대학교	2020	50
평균			40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 따라 사회보험의 소관 부처에서 매년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평가·보고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14억원(연평균 23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계획 (안 제15조)	2,288	2,288	2,288	2,288	2,288	11,440	2,288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2,248	2,248	2,248	2,248	2,248	11,240	2,248
- 기획재정부 메타평가	40	40	40	40	40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assembly.go.kr